

의안번호	제호	의결사항
의결 연월일	2026. . . (제회)	

국가재정법시행령일부개정령안

제출자	국무위원 박홍근 (기획예산처장관)
제출연월일	2026. . .

법제처 심사 전

1. 의결주문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

2. 제안이유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하여 국가와 지방정부 간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획예산처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하여,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위기 대응과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협력방안을 심도있게 논의하기 위함.

3. 주요내용

가. 국가와 지방정부 간 긴밀한 협력이 필요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를 설치함. (안 제2조의3 제1항 신설)

나.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는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과 추진에 관한 사항, 이를 위해 중앙·지방정부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과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을 논의함. (안 제2조의3 제2항 신설)

다.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의 위원장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고,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

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
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
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도의 시장 또
는 지사가 됨. (안 제2조의3 제3항 신설)

라.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미리 지명
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함.(안 제2조의3 제4항 신설)

마. 시행령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
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함.(안 제2조의3 제5항 신설)

4. 주요토의과제

없 음

5.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관계 기관 합의 중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 예정

3) 행정규제 : 해당 없음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국가재정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조의3(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

1.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2.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

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된다.

-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조의3(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 ① 기획예산처장관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간의 긴밀한 협력을 통해 중장기 국가발전전략 및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중앙·지방재정전략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운영할 수 있다.
<신 설>		②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논의한다.
<신 설>		1. 지방소멸, 양극화 등 구조적 문제해결을 위한 중장기 국가발전전략에 관한 사항
		2. 지방주도성장 등을 뒷받침하기 위한 재정정책의 수립 및 추진에 관한 사항
		3. 1호 및 2호와 관련하여 중앙·지방정부간 협의회가 필요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신 설>.		③ 협의회의 위원장(이하 이 조에서 “위원장”이라 한다)은 기획예산처장관으로 하며, 위원은 재정경제부장관이 지명하는

	재정경제부차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지명하는 과학기술정보통신부차관, 교육부차관, 행정안전부차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지명하는 문화체육관광부차관, 농림축산식품부차관, 산업통상부차관, 보건복지부차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 고용노동부차관, 국토교통부장관이 지명하는 국토교통부차관, 해양수산부차관과 각 시·도의 시장 또는 지사가 된다.
<신 설>	④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사람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기획예산처장관이 정한다.

< 의안 소관 부서명 >

기획예산처 재정협력총괄과	
연 락 처	(044) 214 - 1911